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45호 2016. 1. 20.(수)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4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 9

###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지침 -- 1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98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8



회”라 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조례 제4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은 총사업비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총 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으로,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을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0조”를 “법 제37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1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 「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을 “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이동전화)	( )	⑤전자우편	
⑥공간정보의 종류		⑦신청지역	
⑧사용용도		⑨제공방법과 수량	- 종이출력 ( ) 축척: 매수: 축척: 매수: - 전산매체 ( )
⑩비고			

※ 작성요령

⑥공간정보의 종류 : 도시기반시설물도, 수치지도

⑦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⑧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⑨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종이출력의 경우 축척과 매수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

요청자 신원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타당성	
				검토자
승인사항	보안대책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년 월 일

분임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원사항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외에 사용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른 벌칙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시 환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고 발 장

###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생년월일 :

### 2. 피의건명 :

### 3. 피의사실

- 
- 
-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90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자목1) 중 “안전행정부, 기타중앙부서”를 “행정자치부, 그 밖의 중앙부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범 죄 발 생 통 보 서

1. 행 위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및 성 명			
	관 리 기 관			
2. 범 행 사 실	사 건 명			
	내 용			
3. 관 계 기 관 의 조 치	자 체 처 리 및 조 치 상 황			
	고 발 여 부 및 소송 진행 상황			
4. 기 타	참 고 자 료			

(가로 190mm×세로 268mm)

작성요령 :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 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9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2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 조항 변동사항 반영(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
- 위원회 위원 성별 고려, 인적 요건 및 임기 명확화(안 제3조)  
(성별 고려, 위원임기 구분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3,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10인이상 13인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를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관계 실·과·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중 “소속직원이 아닌”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중에서 중기지방재정업무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u> <u>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u> <u>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u></p> <p>1. ~ 3. (생략)</p> <p>4. <u>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3조(구성) ①<u>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u>위원은 관계 국, 실, 과장급공무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u> <u>심의위원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u> ----- ----- -----.</p> <p>제2조(기능) <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사항--.</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p> <p>제3조(구성) ①----- ----- <u>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u></p> <p>②----- <u>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u> -----</p> <p>③<u>위원은 관계 실·과·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u></p>

제4조(임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순에 의한 국·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위원회 -----  
----- .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

제6조(회의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 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제7조(안전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중기지방재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기지방재정계 획을 수립할 때 -----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배부) -----  
-----  
해당 -----  
-----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  
-----  
----- 1명-----.

② -----  
----- 소속 직원 중 -----  
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 -----  
-----.

제9조(실비보상) -----  
----- 범위 -----  
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록) -----  
----- 각 호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

제11조(운영규칙) <삭 제>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b>관계법령</b>	<p>□ 지방재정법</p> <p>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5.28., 2014.11.19.&gt;</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gt;</p> <p>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신설 2014.5.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li> <li>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li> <li>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li> <li>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li> <li>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li> <li>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li> <li>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li> <li>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li> </ol>
-------------	--

## 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p>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p> <p>가. 교부현황</p> <p>나. 성과평가 결과</p> <p>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p> <p>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p> <p>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19.&gt;</p> <p>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19.&gt;</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98호

##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2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폐지이유

- 현행 규칙의 내용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폐지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3,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 과, 소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변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개최시 출석에 대한 일비등의 지급은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9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2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에 따라 제60조제3항과 관련된 조례의 일부개정 필요
  -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2. 주요내용

- 근거 조항 수정(안 제1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를 “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으로 개정

○ 대행 위원회 변경(안 제2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행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3,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u> <u>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u> <u>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시행령</u>」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u>인천광역시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정공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p> <p>④위원회의 기타위원 구성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u> <u>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u> <u>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u>」 제60조제3항에 따른 <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u>의 ----- ----- ----- -----.</p> <p>제2조(구성) <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u></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삭제</p>

제3조(운영) ① (생략)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생략)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  
-----.

- 1.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  
-----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견의 청취) -----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

제6조(수당과 여비) -----  
-----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  
-----  
-----.

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 지방재정법</p> <p>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li> <li>2. 재무제표</li> <li>3. 채권관리 현황</li> <li>4. 기금운용 현황</li> <li>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li> <li>6. 지역통합재정통계</li> <li>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li> <li>8. 중기지방재정계획</li> <li>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li> <li>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li> <li>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li> <li>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li> <li>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li> <li>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li> </ol>
-------------	---

	<p>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p> <p>가. 교부현황</p> <p>나. 성과평가 결과</p> <p>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p> <p>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p> <p>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19.&gt;</p> <p><u>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u></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19.&gt;</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0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2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증채무관리 조례 보증채무 관리 의무 관련 해당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 관련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관련 보고의무를 삭제함(안 제 6조)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관련 보고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및 삭제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3,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으로, “주채무를 구가”를 “주 채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지방의회의”를 “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를 “구의회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주채무관계”를 “주채무 관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을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를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변제기간내에”를 “변제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를 “구의회의”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제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지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①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u> <u>보증채무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u>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u>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1. 2. (생략)</p> <p>3. <u>기타 참고서류</u></p> <p>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u>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u></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u>지방의회</u>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u> <u>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u> -----.</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u>「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u> -----.</p> <p>②----- <u>각 호의</u>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 참고서류</u></p> <p>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 구의회의</u> -----.</p> <p>②----- <u>구의회의</u> -----</p>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

-----  
-----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제3조에 따른 -----  
----- 주채무 관계 -----  
-----  
----- 따라 -----  
-----  
----- 제2항 -----  
----- 에 따른 -----  
-----.

②-----  
----- 주채 -----  
----- 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  
-----  
-----.

-----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  
-----  
-----.

③----- 제1항에 따른 ---  
-----  
----- 제3조에 따라 -----  
-----  
-----

부한다.

④구가 담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④-----  
---- 제3항에 따른 -----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  
-----  
-----  
-----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

<삭 제>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 변제기간 내에 -----  
-----  
-----  
-----.

②-----  
-----  
-----  
----- 구의회의 -----  
-----.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b>□ 지방재정법</b></p> <p>제37조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 지방재정법 시행령</b></p> <p>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	--